대부업체(사채) 이용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고,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에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어떤 대부업체를 선택할 것인지, 대부계약의 체결방법, 법정이자의 범위, 대부금의 상환 및 불법 채권추심의 신고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1
1. 대부업체 이용자 개관 4
1.1. 대부업체 이용자 4
1.1.1. 대부업의 개념 등 4
1.1.2. 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및 주의사항 5
1.2.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9
1.2.1.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개관 9
2. 대부업체의 선택 11
2.1.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용 11
2.1.1.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11
2.1.2. 대부업체의 상호 14
2.2. 대부조건의 확인 15
2.2.1.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의 확인 15
3. 대부계약의 체결 19
3.1.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19
3.1.1. 대부계약서의 작성 19
3.1.2. 대부보증계약 24
3.1.3. 계약관련 증명서의 발급 27
4. 이자의 지급 29
4.1. 이자율의 제한 29
4.1.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29
4.1.2.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30
4.2.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32
4.2.1.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32
5. 대부금의 상환 36
5.1. 채무의 변제 등 36
5.1.1. 기한 전의 상환 36
5.1.2. 일부 상환 36
5.1.3.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채무조정 요청) 37
5.2. 채권추심 기준 42
5.2.1.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42
5.2.2. 채권추심자의 의무 45
5.2.3.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50
5.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3
5.3.1.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조치 53
5.3.2.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54
5.3.3.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56
5.4. 불법 대부업 등 피해구제 59
5.4.1. 불법 대부업의 신고 59

1. 대부업체 이용자 개관

1.1. 대부업체 이용자

1.1.1. 대부업의 개념 등

대부업의 개념 등

대부업

▪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이하 ‘대부’라 함)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 여신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으로 「은행법」의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의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험업법」의 보험회사 등이 있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법령용어해설

▶ “어음할인(割引)”이란 은행 등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비용을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담보(讓渡擔保)”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심(推尋)”이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시해 지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사전 참조>

※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자

▪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불법사금융업자

▪ “불법사금융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유용한 법령정보 1

▶대부업과 사채업의 비교

Q.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규제를 받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1.1.2. 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및 주의사항

신용등급조회 후 대출상품 확인

대출상품 확인

▪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loanProductGlance.do)>에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전에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참고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의 조회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기관 찾기

▪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등을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무료신용조회**
>
> - 회원가입 후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발급 사실, 대출/현금서비스 이용현황, 연체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 신용조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채무조정·신용-무료신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프로그램의 이용

대출중개사이트의 이용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대출중개전문사이트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 회원가입 후 한 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을 안내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기록이 남습니다.

>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대출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loanProductGlance.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의 이용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과 같이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제도(2035년까지 한시적 운영)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새희망홀씨 참조).

> ※ 지원내용, 대출한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이용

신용등급조회

▪ 돈을 빌리기 전에는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고이자율

▪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불법 채권추심 금지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조건의 확인 및 대부업체의 선정

대부조건 확인

▪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게시 된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선정합니다.

대부업체의 선정

▪ 미등록대부업은 위법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합니다.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대부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계약서에 자필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증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자필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이자의 지급

이자의 최고한도

▪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 포함)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율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취급수수료나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대부금의 상환

대부금의 중도상환

▪ 대부업체 이용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지만,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민법」 제468조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 제13조].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회복위원 홈페이지(https://www.ccrs.or.kr/index.do)]을 이용할 수 있고, 고금리사채를 이용하여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resu.klac.or.kr/main.jsp)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갱생(更生)을 돕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1.2.1.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개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제한,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및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의 시·도 등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상호(商號)에 "대부"사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기재사항, 대부업자의 설명의무 및 중요 사항에 관한 거래상대방의 자필 기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

※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간의 대부거래에 관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비용의 부담, 계약서의 교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금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의 내용

▪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 준수해야 하는 이자의 최고한도, 이자의 사전공제 및 간주이자(看做利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 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는 이자로 보는데 이를 "간주이자(看做利子)"라고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채권추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의무

▪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등)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 채권추심자(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고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

▪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되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책임

▪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문).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대부업체의 선택

2.1.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용

2.1.1.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대부업자 등의 등록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3항).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고, 그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6.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활용해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후 1개월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제2항).

▹ 대부업 등의 임직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제3항).

1.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지점의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함)
2. 위 1. 외의 자 :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함)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업무 등의 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아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함)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함)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함)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 신청

▪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자는 제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경영하려는 대부업 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 포함)
-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등록증 교부

▪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신청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2010. 4. 26. 당시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개정법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0호, 2010. 1. 25. 발령, 2010. 4. 26. 시행) 부칙 제4조].

대부업에 대한 확인

대부업 등록부의 열람

▪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본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은 제외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7항).

  √ 등록신청인의 주소

  √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 사용인의 주소

> ※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실태 등의 확인

▪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위반행위 등의 확인

▪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행정처분 사실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2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피해
Q.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하면 어떤가요?
A. 불법사금융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반면, 영업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조건 및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의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대부업체의 상호

대부업 등의 상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상호(商號)의 사용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바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바목).

※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대부업 등’이라 함)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 등'이라 함)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과 관련해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 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 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 대부업자 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

- 이를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1호).

명의대여 등의 금지

▪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의2).

유용한 법령정보 3

▶대부업체의 상호
Q. 상호를 보고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지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따라서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등록대부업체일 가능성이 있지만 유사금융업체('OO캐피탈', 'OO크레디트') 또는 폐업했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대부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호만으로 등록대부업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2.2. 대부조건의 확인

2.2.1.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의 확인

신용정보의 제출

증명서류의 제출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대부업체 이용자가 개인인 경우

√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

√ 신용정보조회 결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대부업체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과잉 대부계약의 금지

▪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거래에 관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비용의 부담, 계약서의 교부, 채권양도, 기한 전의 임의상환 및 신용정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 대부업자는 증명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대부조건의 확인

대부조건의 게시

▪ 대부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대부이자율

· 이자계산방법

· 변제방법

· 연체이자율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이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하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조건의 표시 또는 광고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 이하 '광고'라 함)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 등"이라 함)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등의 전화번호

·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거목).

▪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위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대부업자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이를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너목).

▪ 대부업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평일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토요일과 공휴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위반 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더목).

3. 대부계약의 체결

3.1.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3.1.1.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대부금액
-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0,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 대부이자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연체이자율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사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

▶ 대부업체 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 대부행위 피해

Q.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A.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고금리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대부조건의 게시의무

▪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다음의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이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하목).

설명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아목).

차별금지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 연체이자율

▪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자필 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한 경우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위의 자필 기재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여 확인하는 경우

▸ 위의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함)

√ 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

√ 서면확인서

※ 이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서의 중요기재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카목).

유용한 법령정보 5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지 않은 대부계약

Q.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이나 대부이자율을 대부업자가 직접 적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대부업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대부계약서 예시

대부거래 계약서 예시

▪ 대부거래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

본인 등은 아래의 대부거래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 약 내 용

(굵은 선 부분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합니다)

<table>
<tr><td rowspan="4">대부업자</td><td>상호또는성명</td><td colspan="2">(인)</td><td>TEL</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대부업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채 무 자</td><td>성 명</td><td colspan="2">(인)</td><td>TEL</td><td></td></tr>
<tr><td>생년월일(성별)</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보증인</td><td>성 명</td><td colspan="2">(인)</td><td>TEL</td><td></td></tr>
<tr><td>생년월일(성별)</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보증채무내용</td><td>계약일자</td><td colspan="3"></td></tr>
<tr><td>보증기간</td><td colspan="3"></td></tr>
<tr><td>보증채무최고금액</td><td colspan="3"></td></tr>
<tr><td>연대보증여부</td><td colspan="3"></td></tr>
<tr><td>대 부 금 액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td><td colspan="5">금원정(₩)</td></tr>
<tr><td rowspan="2">이 자 율</td><td>월이율</td><td>%</td><td rowspan="2">연체이율</td><td>월이율</td><td>%</td></tr>
<tr><td>연이율</td><td>%</td><td>연이율</td><td>%</td></tr>
<tr><td colspan="6">※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_____%입니다.</td></tr>
<tr><td>계약일자(대부일자)</td><td colspan="5"></td></tr>
<tr><td>대부기간 만료일</td><td colspan="5"></td></tr>
<tr><td>분 할 상 환 일</td><td colspan="5">. .</td></tr>
<tr><td>이자율의 세부내역</td><td colspan="5"></td></tr>
<tr><td>은행계좌번호</td><td colspan="5"></td></tr>
<tr><td>변 제 방 법</td><td colspan="5">1.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은행송금(채권자 입금계좌)등 당사자가약정한 방법에 의한다
2.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한다.</td></tr>
<tr><td>조기상환조건
(중도상환수수료율)</td><td colspan="5"></td></tr>
</table>

부대비용의 내용 및 금액 (자세하게 기재할것)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비용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기한	

※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 예시: 1. 수령함, 2 들었음)

1.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3.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유용한 법령정보 6

▶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피해

Q.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계약의 효력

대부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대부제공자"라 함)은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된 내용을 포함한 경우

-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3.1.2. 대부보증계약

보증계약서의 작성

보증계약의 체결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부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대부업자(그 영업소 포함)·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보증기간
- 피보증채무의 금액
- 보증의 범위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업 등록번호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보증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채권 담보계약 – 인적담보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사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위의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아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보증기간

· 피보증채무의 금액

· 보증의 범위

· 연체이자율

▪ 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자필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자필 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한 경우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위의 자필 기재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에 대한 보증인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이 녹음된 음성 녹음을 확인하는 경우

▹ 위의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의 방법 중 보증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이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인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합니다.)

√ 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

√ 서면확인서

※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이 보증계약서의 중요기재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제2호카목).

대부보증계약서 예시

대부보증계약서 예시

▪ 대부보증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보증 약정서
[「대부보증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 2014. 9. 19. 발령·시행)]

대부업자는 채무자·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참조).

년 월 일
대부업자 상호 또는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함. 이하 같음)은 채무자가OO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함)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	성 명 : 주 소 :
거래약정	년 월 일자 약정서
채무금액	금 원
상환기일	년 월 일
이자율	연 %
지연배상금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금 원
보증의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	금 원
연체이자율	
특약사항	

(이하 생략)

유용한 법령정보 7

▶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책임이 있나요?

Q.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형법」 제231조)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민법」 제133조)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민법」 제110조)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3.1.3. 계약관련 증명서의 발급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계약서
- 대부계약대장
-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해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위반 시 제재

▪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자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발급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발급

▪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차목).

4. 이자의 지급

4.1. 이자율의 제한

4.1.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대부이자율 제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불법금융대응-이자율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8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연체이자율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전단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후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

▪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 포함)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상사법정이율 및 법정이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4.1.2.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초과부분의 무효

▪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

▪ 대부이자율이 60%이상인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4호).

유용한 법령정보 11

▶ 초과이자 지급 시 반환의 청구

Q.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0% 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0%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억울하네요. 초과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를 단리로 환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 지급에 대한 대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이익의 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명의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임은 인정하지만 현재 책임질 채무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해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1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700만원을 연이율 100%를 조건으로 6개월 동안 빌리는데, 20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700만원 전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갚을 것을 요구했고, 6개월 동안 약 920만원을 갚았습니다.

Q.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총 원리금은 얼마인가요?

A.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500만원에 대한 법정최고 이자율 연 20%를 적용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원리금인 5,295,804원(대출이자계산기이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초과부분 약 39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초과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4.2.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4.2.1.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이용자의 관계



중개의 제한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불법사금융업자´라 함)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6호).

대부업체 이용자의 중개수수료 지급 금지

▪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이라 함)과 불법사금융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함)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6호).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중개수수료의 상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제2항).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백만원 초과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7호).

▪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9호).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손해 배상책임

▪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단서).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대부중개업자 등의 광고 제한

대부중개업자 외의 광고 금지

▪ 대부중개업자 등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 이하 '광고'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대부조건의 표시 또는 광고

▪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중개를 통해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함)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등의 전화번호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대부중개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위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시·도지사,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광고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13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의 반환

Q.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대출과정에서도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6호).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1332)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5. 대부금의 상환

5.1. 채무의 변제 등

5.1.1. 기한 전의 상환

기한 전의 상환(償還)

기한 전의 상환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대부업체 이용자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68조).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기한 전의 임의상환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3조).

> ※ 채무의 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변제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2. 일부 상환

채무의 변제충당

변제충당

▪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조), 한 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여러 개의 급여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조), 또는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관해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합의변제충당

▪ 당사자는 합의 또는 계약으로 변제충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변제충당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6조제1항).

▪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해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지정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76조제2항).

▪ 변제충당의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민법」 제476조제3항).

법정변제충당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릅니다(「민법」 제477조).

>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4. 2와 3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해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변제충당순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

▪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

▪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릅니다(「민법」 제479조제2항 및 제477조).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무변제 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1항).

·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이 채무자의 채무전액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3항).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민법」 및 그 밖의 법률과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4항).

·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릅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5.1.3.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제도의 이해

"채무조정"이란?

▪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은행법」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및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함]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 분할 변제
- 변제기간 연장

-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등의 책임 및 의무

-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면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참조).

  -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 채무조정의 거절·처리 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정보
  -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에 관한 정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채무조정의 지원 절차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함)을 마련·시행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참조).

채무조정의 요청

채무조정 요청의 사유

-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서면, 전화 등의 방식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참조).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의 요청 방법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 채무조정 요청서
- 채무조정안(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정보제공 대상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Q.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나요?

A. 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 개인금융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정·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의 처리 및 조정의 효력

채무조정 요청의 처리

▪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서류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함)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전단·제4항).

▪ 채권금융회사등은 통지 시 채무조정이 결정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후단).

채무조정의 성립 및 효력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동의할지 여부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채무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항 참조).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여 조정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만약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양수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제4항 참조).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채무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그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채무조정의 거절 사유로 인해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통지 시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해제

▪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 절차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 개인금융채무자가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5. 개인금융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6.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알아보기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종류

▪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캠코신용지원·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효과 등이 다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 ※ 그 밖에 채무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채무조정·신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국민행복기금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정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권			제한없음		금융회사 등에서인수한 채권
지원대상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채권 보유	1개월초과~3개월미만연체채권 보유	3개월 이상연체채권 보유	과다채무 "급여소득자"또는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해당자	매입 보유채권

(출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채무조정·신용)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액을 감면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장 10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캠코신용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관계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의 30%~60%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특수채무관계자(7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원금의 60%~9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재산이 있는 경우 보유재산의 가치에 따라 채무조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 ※ 캠코신용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신용지원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로, 원금 및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으며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이자율 인하 및 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법원에 신청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참조).

▪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 하고, '개인면책'은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참조).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청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채권추심 기준

5.2.1.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대부중개 및 채권양도 금지

▪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 대부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 등록된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제3항제1호].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제3항제2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제3항제3호)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제3항제4호)

▪ 이를 위반하고 불법사금융업 등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5호).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

> ※ **용어의 정의**
>
> · "채권추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2. 1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3.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4.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
> 5. 1 ~ 4에 규정된 자들을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
> ·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 포함)을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1조제1호 및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손해배상책임

▪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유용한 법령정보 14

▶ 부당하게 재산이 가압류 된 경우

Q. 대부업체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악의의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선의의 채무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②가압류를 빨리 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해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이와 별도로 ③채무자는 법원에,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및 제2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출처: 금융감독원)

▪ 다만,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있는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손해액 상한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 개인금융채무자는 법정손해배상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변경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추심연락 시 소속·성명 명시 의무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함)를 제시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채권추심자는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5.2.2.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무확인서 발급 요건

▪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의 청구

▪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채무추심자의 통지 의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의무

▪ 채권추심자[「은행법」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및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함. 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함]은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참조).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
  1.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3.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으로 그 통지를 갈음한 경우: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만약,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
-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 위 3.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 Q.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야 할까요?**
>
> A.아닙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위반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면 그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그 밖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금전거래』의<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통지 의무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추심착수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참조).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착수 예정일
3.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4. 연락·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6. 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7.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8. 5.의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 채권추심자는 2024. 10. 27. 전에 추심에 착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추심 통지를 해야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369호, 2024. 2. 27. 개정, 2024. 10. 17. 시행) 제3조 참조].

양도 예정의 통지 의무

▪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양도 예정일, 양수 예정인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업무를 위해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후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참조).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양도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참조).

사유	양도 가능 기간
통지가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양도 가능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양도 가능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임사실 통지 의무

▪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및 그 자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

▪ 채권금융회사등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경매신청 대상 주택, 경매신청 예정일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하나, 통지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절차의 시작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주택의 경매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 참조).

사유	경매 신청 가능 여부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신청 가능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갈음하고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이후 신청 가능
개인금융채무자가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에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신청 불가능
개인금융채무자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이 되는 날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 신청 가능

추심 위탁 예정 통지 의무

▪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해야 하며,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 참조).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을 위탁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해 선정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양수인 평가 및 내부기준의 마련

양수인에 대한 평가

▪ 채권금융회사등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수인을 평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참조).

> ※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에 관한 사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마련

▪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인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채권추심 및 위탁내부기준의 마련

▪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거나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마련·시행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참조).

5.2.3.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채권추심 시 금지 사항

추심의 금지

▪ 채권추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채권(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중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함)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
4.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6.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해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이 확인되는 채권
7. 공공부조(公共扶助)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권
8.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권

동일한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 다음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1.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2.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3. 위의 1, 2. 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채권추심 시 제한 사항

채무자에 대한 연락의 제한

▪ 채권추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인 경우는 제외)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 방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하는 사항이 있어서 통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추심연락 횟수의 제한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아 추심연락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1.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2.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 3. 그 밖에 1.과 2.에서 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참조).

-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함)를 제시해야 하며,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채권양도 시 제한사항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 등 최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 또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참조).

양도 금지 채권

▪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
-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서 정하는 채권

▪ 채권금융회사등은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권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그 밖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5.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3.1.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조치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등에 따른 조치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조치

▪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대상 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참조).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조치 기준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
1.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음
2. 1.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조치할 수 있음
4. 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채권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5.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1.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2. "위임직채권추심인"이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말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3.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3.2.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위반사항 및 벌칙

위반사항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 채권추심자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 참조).

위반사항	벌칙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등을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연 100분의 20의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는 약정을 한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해 광고 행위를 한 자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처리한 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가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증명서류를 사용한 경우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채무자가 아닌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한 자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한 자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추심연락 고지 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금액)를 초과해 지급한 자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여신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5.3.3.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사항 및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채권추심자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별표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

위반사항	과태료

1.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금융위원회의 검사 또는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자	
4.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양도가 제한된 채권을 양도한 자	
6. 추심이 금지된 채권을 추심한 자	
7. 채무조정 거절사유가 아닌 사유로 채무조정을 거절한 자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9.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	
10.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 포함)를 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자	
11.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12. 양도예정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3.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자	
14. 추심연락 횟수 제한 또는 추심연락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15.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유형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은 자	
16.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자	
18.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9. 수임사실을 통보할 때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통지하지 않은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 동일한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21.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자	
22.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23.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24.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25. 채무자에게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26.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받은 자	
27. 추심의 착수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자	
28. 추심 시 채무자에게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않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자	
29.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	
30.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1.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32.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3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한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8, 9, 19.부터 25.까지 및 30.부터 33.까지의 사유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 각 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 불법 대부업 등 피해구제

5.4.1. 불법 대부업의 신고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및 별표).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은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

▪ 피해자가 다수인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포함)의 범인검거공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

▪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③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위반행위 신고 및 수사의뢰

▪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 금융감독원은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